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 조의 6)

○ 7개 업종

- ▷ 원유정제 처리업(19210)
-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20111)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302)
-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20201)
- ▷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20202)
- ▷ 농약제조업(원제제조)(20412)
-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 "복합비료 제조업" 의 경우 단서조항의 개정 공표일 : 2004.12.28

○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

No.	유해·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No.	유해·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1	인화성 가스	취급 : 5,000 (저장 : 200,000)	26	클로로술폰산	500,000
2	인화성 액체	취급 : 5,000 (저장 : 200,000)	27	브롬화수소	2,500
3	메틸이소시아네이트	150	28	삼염화인	750,000
4	포스겐	750	29	염화 벤질	750,000

No.	유해·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No.	유해·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30	이산화염소	500
6	암모니아	200,000	31	염화 티오닐	150
7	염소	20,000	32	브롬	100,000
8	이산화황	250,000	33	일산화질소	1,000
9	삼산화황	75,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500
10	이황화탄소	5,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11	시아나수소	1,000	36	삼불화 붕소	15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물	500
14	황화수소	1,000	39	불소	20,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42	니트로 셀룰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100,000
18	수소	5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19	산화에틸렌	10,0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20	포스핀	50	45	디클로로실란	1,500
21	실란(Silane)	5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25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500,000	48	불산(중량 1% 이상)	1,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3,500	49	염산(중량 10% 이상)	20,0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50	황산(중량 10% 이상)	20,000
			51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20,000

○ PSM 변경관리 대상 중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경우

-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 설비를 포함한다)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해당 전기정격용량이 300 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
- ▷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www.moel.go.kr

위험에는 옐로카드가 없습니다

2011년 5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대상에 한함)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재해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위험을 방지하면 안전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예방 최우선의 자율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고자
2011년 5월 19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시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석면 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이나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등
-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

고용노동부